

1. 4 개 가격비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

‘프리미엄’, ‘스페셜’ 표시상품들 알고 보니 ‘광고’ 상품

2. 엔진오일교환가격 및 세차서비스가격 결정한 경남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마산 지회에 시정조치

엔진오일요금과 세차요금이 카센터마다 똑같아

3. ‘새로운 제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장 실태점검 나선다 민관협력·현장위주로... 실태점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 4 개 가격비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

<http://www.kfcf.or.kr/network/read.jsp?board=32&page=1&serialnum=16012>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지식쇼핑[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 다음 쇼핑하우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어바웃[(주)이베이코리아], 다나와[(주)다나와] 등 4 개 가격 비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4 개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총 2,000 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4 개 가격비교사이트들은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 추천 상품’, ‘소호 BEST100’, ‘스페셜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이 게시된 것으로 인식되는 영역에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전시했음에도 해당 상품이 ‘광고’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 호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4 개 업체에게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의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7 일)을 부과하고, 4 개 업체에게 총 2,000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최근 들어 쇼룸 현상의 확산 등으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비교사이트들이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등으로 표시한 상품에 대해 ‘광고’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시정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또한 향후 허위 또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2014 년 2 월 1 일 시행)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도 유도할 계획이다.

[위로이동]

2. 엔진오일교환가격 및 세차서비스가격 결정한 경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 지회에 시정조치

<http://www.kfcf.or.kr/network/read.jsp?page=1&serialnum=16006&board=32>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자 단체인 경상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가 차종별엔진오일교환가격 및 세차서비스요금을 결정·통보해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마산 및 함안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상남도자동차전문정비조합 마산지회는 2008 년 10 월 31 일부터 2013 년 10 월 26 일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엔진오일교환 및 세차서비스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구성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상품의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마산 및 함안지역 차량정비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26 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 1 항 제 1 호를 적용, 경상 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에 대해 범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구성 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와 더불어 과징금 900 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차량 사용에 필수적 구매품목으로서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엔진오일 교환 및 세차 서비스 등 자동차 정비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시정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와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사업자가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엔진오일 및 세차서비스 가격을 결정·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로이동]

3. ‘새로운 제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장 실태점검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T/F(팀장 : 공정위 사무처장)’를 구성하여 6 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시행령·지침 개정 등을 완료했다.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하여 사업자의 거래관행이나 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지 시차없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실태를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파악·분석하기 위해 민간업계·관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T/F를 구성(팀장: 공정위 사무처장)했다.

T/F 구성원은 총 21 명(민간 측: 18 명, 정부 측: 3 명)으로 민간 대표로는 사업자단체 (중기중앙회·전문건설협회, 소프트웨어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유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교수 등이며, 정부 대표로는 공정위 (사무처장, 기업거래정책국장), 중기청(중소기업정책국장)이다.

새로 도입된 제도에 중소기업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며, 3 배 손해배상제 또는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의사가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기타 제도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분야에서는 관련 제도 도입 이후 대금지급 결제기간·현금결제비율의 변화정도,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부당한 단가인하 관행이 줄었는지, 계약체결과정에서 상호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계약내용을 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통분야에서는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시행 이후 유통업체가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관행이 줄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맹분야에서는 예상매출액 관련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요구 주기에 변화가 있는지, 개선요구 시 그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어떻게 분담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 등을 경청할 계획이다. 실태실태점검은 실제로 시장참여자들의 거래관행에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을 위주로 하되, 설문조사 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2014 년 5 월부터 7 월까지 분야별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약 3 개월)할 예정이며, 2014 년 8 월에 분석 및 결과를 보도자료 등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위로이동]